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소관 위원회 정비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여성어업인육성 정책 심의회의 역할을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가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여성어업인육성정책 심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항 삭제

나.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및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를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로 하고, “각 심의회”를 “심의회”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및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를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심의회”를 “심의회”로, “보좌하며, 해당”을 “보좌하며,”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각 심의회”를 각각 “심의회”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심의회”를 “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심의회”를 “심의회”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각 심의회”를 “심의회”로 한다.

제8조 중 “각 심의회”를 “심의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 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양수산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여성어업인 3. 어업 및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및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각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해당 심의회 위원장을 보좌하며, 해당 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각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각 심의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생략)

2.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
해양수산부 여성어업인 육성
업무 담당 과장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심의회의 회의 개최 및 운

-----.

② 심의회-----
----- 보좌
하며, -----

-----.

제5조(회의) ① 심의회-----

-----.

② 심의회-----

-----.

제6조(간사) ① 심의회-----

-----.

1.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
심의회-----

영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수당 등) <u>각 심의회</u>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u>각 심의회</u>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수당 등) <u>심의회</u>----- ----- ----- -----. ----- 제8조(운영 세칙) ----- ----- <u>심의회</u>----- ----- ----- -----.
---	--